

대전지방법원 2019. 1. 4 선고 2018가단15946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유한회사 A

피고1. B 주식회사

2. 주식회사 C

특별대리인 D

3. E 주식회사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9. 1. 4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세종특별자치시 F 대 76m²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1997. 10. 13. 접수 제1519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6. 2. 2.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이은신

별지